

의안번호	2219595
의 퇴 인	이정헌의원
회 답 일	2026.7.28.
추계번호	26C3147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정의)	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3. “국가건강검진”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. 차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(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 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국가건강검진 정의(안 제3조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결혼이민자(F-6 체류자격)를 포함할 경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대상 건강검진 수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재 결혼이민자는 입국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¹⁾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에 이미 포함되

1) 「국민건강보험법」

제4조(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 시기 등)

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.

1.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(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이 6개월(제5항에

고 있으므로,²⁾ 개정안이 기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확인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

-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세 이상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및 연령 기준에 따른 암검진을 수행하고 있으며,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음

- 반면,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국가건강검진과 별도로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새로 실시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독립적인 건강검진의 수행 여부 및 방법, 검진 항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문지은

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)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: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. 다만,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(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.

2.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국내에 입국한 날. 다만,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(F-4)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.

가.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

- 2) 일반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당연 가입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